

산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조사
2. 경영컨설팅
3.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4. 계약금액 조정
5. 개발비용 산정 및 확인
6. 학술용역
7. 사업타당성 검토 및 조사
8. 중소기업 경영진단과 지도상담
9. 연구발표회와 연수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10.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소원) (삭제 2018. 7. 9.)

제5조(부서) (삭제 2022. 2. 1.)

제6조(조직 및 업무)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2. 1.)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필요에 따라 교원의 자격에 준하는 교외의 전문인을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개정 2021. 2. 15.)

③ 소장은 원가계산 업무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책임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⑤ 연구원과 계약직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2. 1.)

제7조(임면) 계약직원의 임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총회) (삭제 2018. 7. 9.)

제9조(총회 심의사항) (삭제 2018. 7. 9.)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른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2조(경비) 연구소의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으로 연구소의 운영비를 충당한다.

제13조(사업비 관리) 사업비의 관리 및 운영은 산학협력단 회계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사업계획) 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사업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